

○委員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成泰辰 專門委員 成泰辰입니다.

1991年 12月 16日字로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件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1989年 11月 1日字로 서울特別市 職制改正 및 1991年 7月 1日字로 都小賣業振興法이 改正됨에 따라, 條例 第2條2號에서 地方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賣場面積이 3,000㎡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의 開設許可에 관한 사항이 “賣場面積 3,000㎡ 이상의 增設許可”에 관한 事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同 條例도 이에 부합되게 改正하는 것입니다.

또 第3條1項 審議委員會의 委員數를 13人에서 同法施行令 第34條에서 規定한 定數인 15人으로 擴大한 것은 上位法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當然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第3條 第2號, 第3號, 第4號에서 서울特別市長이 委囑하는 委員 中 定數로 되어 있는 분야별 委員의 數를 同法施行令에서 規定한 內容대로 定數規定을 각각 삭제함과 동시에 第3條 第4號의 “關聯業界 代表”를 “關聯業界 團體 代表”로서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인 都小賣業者 1人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第3조2項 當然職委員 中 “建設管理 局長”을 “住宅局長”으로 改正한 本 條例는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네, 감사합니다. 以上으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事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中改正案件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 意見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可決한 것으로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소매점에 한한다)의 개설허가”를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점의 개설허가 또는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증설허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3인”을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2인”을 제3호 중 “2인”을, 제4호 중 “3인”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4호의 “관계업계 대표”를 “관계업계 단체대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업계 단체대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特別市物價安定基金의積立과管理에關한 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時 07分)

○委員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物價安定基金의積立과管理에關한 條例廢止條例案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